

18. 農地法施行規則(訂正)

農林水產部 第1217號 1996. 1. 26

관보 제13201호 (그2)(1995. 12. 29)에 게재된 농림수산부령 제1,217호(농지법시행규칙)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.

관련조문	오류사항	정정사항
제34조 제2항 제4호 별지 제24호서식(앞쪽) ⑤농지전용신고근거란	4. 영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(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) <input type="checkbox"/> 농지법시행령 제60조	4.(변경협의요청의) <input type="checkbox"/>제61조
별지 제31호서식(앞쪽) 구비서류 제4호	4. 영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(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)	4.(변경협의요청의)
별지 제53호 서식	시장·군수·읍장·면장 ☐ 구청장 ☐